

제346회 임시회
운영상황결과보고

(2017. 9. 6 ~ 9. 13)



전라북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제 346회 임시회

(2017. 9. 6 ~ 9. 13)

제346회 임시회 개회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제346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쁩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처럼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도 희망과 결실의 기운이 보다 풍성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 8월 17일 우리 전라북도는 또 하나의 큰일을 해냈습니다. 전 지구촌 청소년들의 유쾌한 잔치이자 국격을 높이고 전북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새만금으로 유치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도전과 열정으로 좋은 결실을 거둔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만금 잼버리대회가 우리 전북에 미치는 유무형의 파급효과는 매우 큽니다. 당장 새만금 내부개발이 보다 앞당겨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세계 속에 전북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행사장과 주변 경관 조성, 교통인프라 등 각종 기반구축이 선결과제인 만큼 전라북도에서는 정부 그리고 정치권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로드맵을 보다 세심하고 면밀하게 추진하여 새만금 잼버리대회가 한국 속에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가 재창조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한국감정원 군산지사가 통폐합 6년 만에 복원되고 광주·전남본부로 통폐합된 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수급 업무도 재개된다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광주·전남으로 넘어간 공공기관을 되찾아 오자는 전북뭉찾기 범도민운동의 결실이 하나씩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아무쪼록 새 정부에서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광주권 예측화 고리를 끊고 전북 자존의 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승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라는 교육비전을 세우고 지나친 경쟁과 성적최고주의에 내몰린 아이들에게 자발적으로 소질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혁신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학생인권센터 운영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성희롱 의혹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안의 한 중등교사 사건의 진상에 대한 공방이 가열되면서 전북교육청이 학생인권보호에만 치우친 나머지 교사인권에는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조화롭게 공존할 때 우리가 바라는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바로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 내에서 학생, 선생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 동안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의와 전라북도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의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민의 곁으로 더욱더 다가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전북만들기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를 맞아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6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황 현

목 차

제346회 임시회

I.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2. 회기 및 운영
3. 의 사 일 정

II.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2. 처 리 현 황

III.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2. 처 리 현 황
3. 위원회별 처리현황
4. 주요 처리사례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17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2. 2017년 위원회별 요구상황
3. 제10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
4.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

I .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 집회 공고 : 2017. 8. 30(수)
- 집회 일자 : 2017. 9. 6(수) 14:00
- 집회 사유
 -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조례안 및 계류의안 등 안건 심의
 - 상임위원회별 활동

2. 회기 및 운영(제10대)

- 회 기 : 2017. 9. 6 ~ 9. 13(8일간, 2017년 : 76일, 총누계 492일)
- 개의일수
 - 본회의 : 2(연누계 : 20, 총 누계 96)
 - 상임·특별위원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농산업 경 제	문화관광 건 설	교 육	특 별
제346회 임사회	12	1	2	2	1	3	2	1
2017 년도	118	10	21	19	17	20	18	13
총 누 계	813	57	167	116	127	138	149	59

3. 의사일정

○ 본회의

일시	부 의 안 건	비고
9. 6(수) 14:00	<p style="text-align: center;">《 제1차 본회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식 ○ 5분 자유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종철 의원, 김영배 의원, 양성빈 의원, 이해숙 의원, 장학수 의원 최인정 의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4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4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국가인권위원회 전라북도 지역사무소 설치 촉구 결의안 7. 소방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촉구 건의안 8. 그린아이넷 품질성능 공개검증 및 법 개정 촉구 결의안 9.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및 풍력발전 전문 교육기관 전복설립 촉구 결의안 10.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촉구 및 교육개혁 방향 건의안 11. (주)넥솔론 파산위기,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 12. 가정·성폭력 상담소·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13. 본회의 휴회의 건 	
9. 13(수) 14:00	<p style="text-align: center;">《 제2차 본회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분 자유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성환 의원, 이현숙 의원, 장명식 의원, 최영일 의원, 최명철 의원 최영규 의원, 이도영 의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2.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3.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4.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전라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전라북도 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시	부 의 안 건	비 고
	14. 전라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16. 전라북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7. 전라북도 주민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청구 기준에 관한 조례안 18.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 20.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산교육문화회관 학생수영장 증축】 21.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체육고등학교 체육관 증축】 22.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유아교육진흥원 석교분원 다목적강당 외 증축】 23.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 강당, 기숙사, 식생활관 증축】 24.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산고등학교 식생활관 개축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25.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6. KBS, MBC 방송민주화와 파업지지 결의안 27. 러시아 유조선 건조 물량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우선 배정 촉구 결의안 28. 코레일-SR 통합 및 전라선 SRT 신설 촉구 결의안	

○ 상임·특별위원회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운영위원회	9. 6(수) 10:00	1	○ 일반안건 심사의 건 - 제3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9. 7(목) 11:00	1	○ 의안심사 -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9. 8(금) 10:00	2	○ 현지 의정활동 -전라북도의회 외교정책 활성화 연구회(여수)	
환경복지위원회	9. 7(목) 10:00	1	○ 의안심사 - 전라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금)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의정활동 - 악취민원 다발지역 현장 방문 	
농산업경제 위원회	9. 6(수) 15: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심사 -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전라북도 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력양성사업 성과평가 외부전문가 활동 동의안 심사 	
문화건설	9. 6(수) 15:3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심사 - 전라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 전라북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전위원회	9. 7(목) 14:3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의정활동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북선수단 결단식 	
	9. 8(금) 1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의정활동 - 남원·장수 가야유적 정비사업 	
교육 위원회	9. 7(목)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심사 - 전라북도 주민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청구 기분에 관한 조례안 -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 -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5건)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9. 8(금)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특별 위원회 (예결위)	9. 11(월)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 정책질의 - 행정국, 교육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 미진부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심사의결 	

II.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수현황

○ 접수기관 및 의안별

제346회 (2017. 9. 13기준)

구 분	계	조 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일반 의안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금 회	39	19	8	11	0	0	9	0	1	10	0	
	누 계	1137	632	288	339	11	13	1	259	0	40	144	48
의 회	소계	금회	24	13	7	6			1			10	
		누계	604	392	245	147	0	13	1	8	0	0	144
	의원	금회	23	13	7	6						10	
		누계	556	392	245	147	0	12	0	3	0	0	130
	위원 회	금회	1	0					1				
		누계	48	0	0	0	0	1	1	5	0	0	14
	도지사	금 회	7	5		5			2				
		누 계	394	186	131	148	7	0	0	186	0	21	0
교육감	금 회	8	1	1				6		1			
	누 계	139	54	6	44	4	0	0	65	0	19	0	1

2. 처리현황

○ 총 괄

제346회 (2017. 9. 13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미료, 미심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대안						
총 계	금회	39	36	31	5	0	0	0	0	3	
	누계	1137	1108	935	143	0	16	0	14	29	
조 례 안	소계	금회	19	16	14	2	0	0	0	0	3
		누계	632	614	484	112	0	3	0	6	27
	의회	금회	13	10	9	1					3
		누계	392	368	297	66	0	0	0	5	24
	도지사	금회	5	5	4	1					0
		누계	186	184	141	40	0	2	0	1	2
	교육감	금회	1	1	1						0
		누계	54	53	46	6	0	1	0	0	1
	규 칙 안	금회									
		누계	13	12	11					1	1
	규 정 안	금회									
		누계	1	1	1						
승인동의안	금회	9	9	7	2					0	
	누계	259	258	234	9	0	10	0	5	1	
일 반 의 안	금회										
	누계										
예산결산안	금회	1	1		1					0	
	누계	40	40	18	20	0	2	0	0	0	
건의결의안	금회	10	10	10						0	
	누계	144	143	140	1	0	1	0	1	1	
기 타 의 안	금회										
	누계	48	48	48							

○ 위 원 회

구 분	회 부										처 리				미 료	미 심 사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29	19	0	0	9	0	1	0	0	26	19	7	0	0	3	
	누계	957	629	13	1	250	0	39	17	3	928	768	128	16	13	29	
운 영 위 원 회	금회																
	누계	56	36	13	1	0	0	0	6	0	50	46	1	1	2	6	
행 정 자 치 위 원 회	금회	4	2			2					3	1	2			1	
	누계	186	134	0	0	40	0	0	2	1	183	158	23	2	0	3	
환 경 지 위 원 회	금회	6	6								5	4	1			1	
	누계	138	117	0	0	18	0	0	3	0	132	109	20	1	2	6	
농 산 업 경 제 위 원 회	금회	6	6								5	5				1	
	누계	162	86	0	0	73	0	0	3	0	155	131	17	7	2	7	
문 화 관 광 건 설 위 원 회	금회	3	3								3	2	1			0	
	누계	166	106	0	0	56	0	0	4	0	164	128	26	0	3	2	
교 육 위 원 회	금회	8	2			6					8	6	2			0	
	누계	203	136	0	0	64	0	1	0	1	196	167	22	3	4	7	
특 별 위 원 회	금회	2				1		1			2	1	1			0	
	누계	42	0	0	0	1	0	39	1	1	42						

○ 본 회 의(직접부의)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10						10		10	10					
	누계	180	1			7		130	42	180	177	2		1		

○ 본 회 의(의 결)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39	19			9		1	10		36	31	5		3	
	누계	1137	632	13	1	259		40	144	48	1108	935	143		14	29

제10대 의안처리 현황

○ 기관 및 의안별 <접수>

제346회 (2017. 9. 13기준)

구 분	계	조 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일반 의안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1137	632	288	339	11	13	1	259	0	40	144	48	
의 회	소 계	604	392	245	147	0	13	1	8	0	0	144	47
	의 원	556	392	245	147	0	12	0	3	0	0	130	19
	위 원 회	48	0	0	0	0	1	1	5	0	0	14	27
전라북도지사	394	186	131	148	7	0	0	186	0	21	0	1	
전라북도교육감	139	54	6	44	4	0	0	65	0	19	0	1	

○ 의안 및 처리유형별

제346회 (2017. 9. 13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대안					
총 계	1137	1108	935	143	0	16	0	14	29	
조 례 안	소 계	632	614	484	112	0	3	0	6	27
	의 회	392	368	297	66	0	0	0	5	24
	도 지 사	186	184	141	40	0	2	0	1	2
	교 육 감	54	53	46	6	0	1	0	0	1
규 칙 안	13	12	11					1	1	
규 정 안	1	1	1							
승 인 동 의 안	259	258	234	9	0	10	0	5	1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안	40	40	18	20	0	2	0	0	0	
건 의 결 의 안	144	143	140	1	0	1	0	1	1	
기 타 의 안	48	48	48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제 출 자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제 출 일 자	2017. 8. 2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2017. 8. 30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의 결 일 자	2017. 9. 6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삼성 새만금 투자 MOU의 투자무산 논란의 원인과 배경을 조사하여 투자협약 관련 제도적 보완점을 마련하여 MOU 관련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 ※ 주요내용 :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 의안정보 참고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8. 29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8. 30
	의 결 일 자	2017. 9.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9.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9.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고령화시대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의 수요에 적극 대응

*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심의 의결(' 17. 3. 9) : 존속기한 연장

□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용도 구체화(안 제4조)

- 수행단체 구체화, 노인복지회관 운영 삭제, 포괄규정 변경 등

나.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구성 기준 정비(안 제5조)

- 기획조정실장 →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도록 변경, 성별 단서조항 신설

다.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안 제11조)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17. 5. 26.)

라.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근거조항 변경(안 제11조)

전라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8. 2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8. 30
	의 결 일 자	2017. 9.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9.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9.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에 따라 법에 맞추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시책의 범위 확대, 안전교육·문화 진흥계획 수립 등 내용을 개정하고
- 기존 구성된 「안전문화운동 추진 전라북도협의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시책의 범위 확대(안 제5조)
- 나. 안전교육기본계획에 따라 안전교육·문화 진흥계획 수립(안 제6조)
- 다. 협의회 명칭 변경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내용 개정(안 제10조 ~ 제15조)

전라북도 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8. 29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8. 30
	의 결 일 자	2017. 9.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9.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9.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협동조합 기본법」에 협동조합의 설립·변경·조직변경 신고 관리를 도지사가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 일부 사항이 미비하여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법령상 의무가 아닌 협동조합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그 설치 여부를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난립을 예방하고자 함.
- 도지사의 고유사무인 협동조합 관련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도청까지 찾아와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없애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도지사의 협동조합 설립 신고 처리시 신고확인증 발급을 명확화하게 하고(제3조제1항제1호) 조직변경 신고 관리 사항을 조례에 반영(제3조제1항제4호)
- 나. 도지사의 협동조합 위원회의 설치가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관련 조문을 재량사항으로 변경(제8조제1항)
- 다. 협동조합에 관한 사무의 시·군 위임 근거를 마련(조례안 제13조의2)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8. 29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8. 30
	의 결 일 자	2017. 9.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9.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9.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현행 자활기금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자활사업 활성화 및 다양한 정책수요에 적극 대응
- 보건복지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표준안』 및 지침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필요

□ 주요내용

- 가.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 나. 자금 대여 구분 및 대여금액, 상환 또는 지원기간 신설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다.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운용관 직위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라. 사업의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 (현행) 2017년 12월 31일 → (변경) 2022년 12월 31일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7. 8. 29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17. 9. 11 (2017. 9.7)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9. 13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17. 9. 14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세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가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합 계	3,180,054,169	3,083,998,872	96,055,297
이 전 수 입	2,950,758,132	2,854,702,835	96,055,297
자 체 수 입	33,662,075	33,662,075	0
차 입	57,331,608	57,331,608	0
기 타	138,302,354	138,302,354	0

-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가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합 계	3,180,054,169	3,083,998,872	96,055,297
유아및초중등교육	2,971,667,913	2,888,792,436	82,875,477
평생·직업교육	7,149,678	7,149,678	0
교육일반	201,236,578	188,056,758	13,179,820

수정안

- 군산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신축의 건 삭감(1,300백만원)

전라북도 주민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청구 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7. 8. 29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8. 30
	의 결 일 자	2017. 9.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9.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9. 14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주민 수 기준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주민의 조례 청구 기준을 정함(안 제2조)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7. 8. 2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8. 30
	의 결 일 자	2017. 9. 7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9. 13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7. 9. 14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초등학교 신설·폐지, 학교명칭 변경, 원활한 학생 배치, 농어촌학교 활성화 등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

□ 주요내용

- 가. 제4조의 학교군 및 중학구 학생 배정의 특례 내용을 구체화하며,
 별표 1의 중학교군 중 전주시·군산시·익산시의 학교군에 초등학교 신설·폐지, 학교명칭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별표 2의 중학구 중 전주온빛중학구를 한시적으로 조정하여 만성개발지구 중학교 신설 지연에 따른 학생배치 문제를 해소하며,
 별표 2의 중학구 중 군산시 관내 5개 중학구에 군산시 학교군 졸업(예정)자가 진학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농어촌학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 수정안

- 가. 전주시 만성개발지구 {(현)동산동29통, 30통} 중학교 배정 시 전주시 4학교군 전체로 배치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산교육문화회관 학생수영장 증축】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7. 8. 2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8. 30
	의 결 일 자	2017. 9.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의 결 일 자	2017. 9.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9. 14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군산교육문화회관에 학생수영장을 건립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수영 실기교육은 물론이고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체험공간 활용, 그리고 지역 장애인,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군산교육문화회관 학생수영장 증축 (단위 : 천원)

계획구분	소재지	지번	용도	구분	면적(m ²)	예정가액	취득사유
증축	군산시 조촌동	853	수영장	건물	2,100	7,536,127	학생수영장 증축
취득	군산시 조촌동	862-14, 862-6	주차장	토지	1,472	1,300,000	주차장 확보
합 계					3,572	8,836,127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체육고등학교 체육관 증축】**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7. 8. 2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8. 30
	의 결 일 자	2017. 9.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9.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9. 14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날씨, 미세먼지 등 기상 상황과 상관없이 지덕체를 갖춘 전인교육을 위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체육관을 증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전북체육고등학교 체육관 증축 (단위 : 천원)

계획구분	소재지	지번	용도	면적(m ²)	예정가액	취득사유
증축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377-19	체육관	1,035	3,981,961	체육관 증축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유아교육진흥원석교분원다목적강당 외 증축】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7. 8. 2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8. 30
	의 결 일 자	2017 9.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9.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9. 14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유아교육은 실외체험 활동영역이 넓으나 실외 화장실이 부족하여 많은 유아들이 체험활동 시에 사용하기 불편하고, 식생활관에 화장실이 없어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제공을 위해 화장실을 증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북유아교육진흥원 석교분원 다목적강당 외 증축 (단위 : 천원)

계획구분	소재지	지번	용도	면적(m ²)	예정가액	취득(처분)사유
용도폐지 및 철거	김제시 백산면 석교리	1-2	숙직실 샤워실	74	15,000	노후화 및 다목적강당증축을 위해 용도폐지 및 철거
증축			사무소	996.7	1,860,514	다목적강당 증축
취득			공작물	7식	511,735	모험놀이터 조성
증축			화장실	91.8	122,705	실외놀이장 화장실
증축			화장실	45.9	61,722	식생활관 화장실
합 계				1,208.4	2,571,676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 강당, 기숙사, 식생활관 증축】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7. 8. 2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8. 30
	의 결 일 자	2017. 9.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9.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9. 14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일반계 학급수 증설에 따라 현재 기숙사 및 식생활관이 없어 일반계 학생들의 교육과정의 적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강당 및 기숙사, 식생활관을 증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 강당, 기숙사, 식생활관 증축 (단위 : 천원)

계획구분	소재지	지번	용도	면적(m ²)	예정가액	취득사유
증축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165	강당	54	350,804	강당 증축
			기숙사 1동	990	1,957,981	기숙사 및 식생활관 증축
			식생활관	265	661,944	
합 계				1,309	2,970,729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군산고등학교 식생활관 개축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7. 8. 29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8. 30
	의 결 일 자	2017. 9.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9.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9. 14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폐교(2003.02.28.)된 용화초 또한 국·공유재산이 혼재되어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구)용화초등학교와 군산고등학교 내 교육부 토지·건물과 상호 교환하여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군산고등학교 국유재산 취득

(단위 : 천원)

계획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용도	면적(m ²)	예정가액	취득사유
취득	군산시 동흥남동	402-30	토지	1,500	720,000	교환
			건물	939.17	281,564	교환
합계					1,001,564	

○ 용화초등학교 공유재산 처분

(단위 : 천원)

계획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용도	면적(m ²)	예정가액	처분사유
처분	군산시 회현면 원우리	301 외 18필지	토지	13,922	924,745	교환
			건물	1,245.74	75,096	교환
합계					999,841	

전라북도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김영배·국주영은 의원 외 14인		제 출 일 자	2017. 8. 29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8. 30
	의 결 일 자	2017. 9. 7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9. 13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7. 9.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제명 “전라북도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로 한다.
-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부 개정.
- 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안 제10조),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안 제17조) 조항 신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① (생략)	제10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① (개정안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p>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p>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국주영은 의원 외 11인		제 출 일 자	2017. 8. 29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8. 30
	의 결 일 자	2017. 9.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9.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9. 14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정보화지원 컴퓨터”의 용어의 뜻을 정하고 예산편성, 사업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 시에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가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위원회를 겸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정보화지원 컴퓨터”의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제1항제9호)
- 나. 예산편성, 사업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 시 용어 사용을 규정함(안 제2조제2항)
- 다.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가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위원회를 겸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라. 유·무상 서비스 또는 제품 도입 시 조례 적용을 규정함(안 제29조)

전라북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송성환최훈열 의원 외 10인		제 출 일 자	2017. 8. 2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8. 30
	의 결 일 자	2017. 9.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9.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9.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함.

□ 주요내용

- 가.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 지배에 맞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일어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 시키고,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와 제2조)
- 나.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전라북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 다.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및 유적지 등 기념시설 설치 및 정비 등 기념사업을 규정하고,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 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독립유공수당 및 조의금 등 독립유공자 예우·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독립운동 기념사업과 독립운동유공자 지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제 출 자	최은희 의원 외 21인		제 출 일 자	2017. 8. 29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8. 30
	의 결 일 자	2017. 9.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9.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9.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여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4조)
- 다. 전라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안 제5조)
- 라. 관광약자를 위하여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 마.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제 출 자	송지용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7. 8. 29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8. 30
	의 결 일 자	2017. 9.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9.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9.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도지사의 책무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안 제2조부터 제4조).
- 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마련 (안 제6조).
- 다. 개인정보의 열람 등에 따른 이의 제기 절차마련 (안 제8조).
- 라.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구성 근거마련 (안 제9조).
- 마. 보험·공제 등의 가입 근거마련(안 제14조).

전라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강용구·김현철·이학수·박재만·백경태 양용호·이현숙·정진세 의원		제 출 일 자	2017. 8. 29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8. 30
	의 결 일 자	2017. 9.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9.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9.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올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개정(법률 제14593호, 시행 2017.3.14.)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에 따라 위임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안전인증의 면제를 도지사가 확인하고 면제를 위해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명시(안 제2조)
-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위임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도지사가 확인하고 면제를 위해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명시(안 제3조)
- 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위임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를 도지사가 확인하고 면제를 위해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명시(안 제4조)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김현철·양성빈 의원 외 6인		제 출 일 자	2017. 8. 29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8. 30
	의 결 일 자	2017. 9.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9.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9.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특히 농어업이 가지는 계절적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도내 농어가에서는 인력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농어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농어촌 인력난과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어업 생산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농어업인력지원센터를 지원·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도지사는 시·군에 농어업인력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그 역할을 규정하여 도내 농어가의 인력수급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8. 29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8. 30
	의 결 일 자	2017. 9.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9.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9.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기대되는 타 지역 인사를 대상으로 우리 道 발전에 폭 넓은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하고자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성명	소속/직위	출신	주요경력	비고
송인택	전주지방검찰청 지검장	대전	○ 前 청주지검장	
이은항	광주지방국세청장	전남 (순천)	○ 前 국세공무원교육원 원장	
강성대	한국은행 부산본부장	경남 (합천)	○ 前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8. 2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8. 30
	의 결 일 자	2017. 9.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9.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9.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기대되는 타 지역 인사를 대상으로 우리 道 발전에 폭넓은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하고자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부득이한 사유로 기수여하고 의회 사후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성명	소속/직위	출신	주요경력	비고
반기문	연세대 석좌교수	충북 (음성)	○ 前 유엔사무총장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8. 2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8. 30
	의 결 일 자	2017. 9.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9.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9.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 관련 운영개선과 특별자금 지원근거 및 개정된 규정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확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지속적인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안 제3조)
- 나. 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위촉 대상 확대 등 운영개선(안 제15조)
- 다. 급격한 경제변화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특별자금 지원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 라. 용자 취급은행의 범위를 현재 운영에 맞게 변경(안 제7조)
- 마.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예산수립 근거 마련(안 제8조)
- 바. 벤처기업 및 4차산업 관련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특례보증 지원 등을 위한 출연 및 보조 대상기관 확대(안 제10조)
- 사. 기금 지원사업 추진 시 관리·감독 근거 마련(안 제17조)
- 아. 법령 및 조례 명칭변경 등 관련법규 개정사항 반영(안 제1~3조, 제10조)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김대중김현철 의원 외 11인	제 출 일 자	2017. 8. 29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17. 9. 6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9. 13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17. 9.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통시장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점포가 밀집되어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시 대형 피해로 확산되는 경향이 강함
-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을 꺼려하고 화재발생시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등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보험·공제에 대한 지원 필요

□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공제사업에 전통시장 상인회와 상인들의 적극적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안 제4조의2)

국가인권위원회 전라북도 지역사무소 설치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허남주 의원 외 9인		제 출 일 자	2017. 8. 29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9. 6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9. 7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부여 받았고, 또 마땅히 존중받아야 권리인 갖고 있으나 과거 정권에서 우리는 오히려 국가와 몇몇 정치인들에 의해 차별과 역차별을 수없이 받아왔고, 인간으로서의 가치 또한 무수히 짓밟혀 왔음
 - 불의에 항거하고 정의를 꿈꾸며 인간답게 살기위해 어떤 지역 누구보다도 많은 피와 땀을 흘렸고 노력 해온 지역이 바로 우리 전라북도임
 - 동학농민혁명을 비롯해, 4.19 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모두 전라북도민의 희생과 저항이 시발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전라북도에는 아직도 국가가 책임지는 인권행정이 요원함
 - 대한민국은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였고, 2005년에는 영남권의 부산사무소, 호남권의 광주사무소 등 지역인권사무소가 설치되었으며, 2007년 7월 대구사무소, 2015년 9월 대전사무소, 그리고 2017년 6월에는 강원도 사무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전라북도의 인권상담 누적건수는 총 2,585건으로 17개 광역지자체에서는 경기와 전남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치이지만, 인권문제를 상담하고 구제하는 국가차원의 호남인권기구는 10년이 넘도록 광주지역사무소에만 설치되어, 전북은 인권에서도 소외됨으로써 도민들이 겪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음.
- 이에 전북도의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전라북도 지역사무소 설치를 촉구하고, 불임과 같이 결의 함.

소방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이도영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7. 8. 2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9. 6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9. 7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복지 및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화상전문센터 등을 갖춘 소방전문병원을 전라북도에 조속히 설치하라.

전라북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장학수 의원 외 14인		제 출 일 자	2017. 8. 29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8. 30
	의 결 일 자	2017. 9.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9.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9.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최근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증가와 저금리 등으로 인해 전라북도의 월세가구 비중이 전체가구의 20%를 넘어서고 있으며,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에 따른 분쟁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주택임대차 분쟁에 있어 경제적·법률적 약자에 대한 사회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바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라북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안 제3조)
- 나. 조정위원회의 구성, 결격사유, 신분보장, 제척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7조)
- 다. 조정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대한 사항(안 제 8조)
- 라. 조정의 신청 및 신청반려, 조정 방법, 처리기간, 조사 등 조정과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5조)
- 마. 조정의 효력에 대한 사항(안 제16조)
- 바. 조정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전라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이성일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7. 8. 29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8. 30
	의 결 일 자	2017. 9.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9.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9. 14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전라북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북도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를 정의함(안 제3조)
- 다. 산림교육지역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산림교육 지원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5조)
- 마.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6조)
- 바.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7조)

그린아이넷 품질성능 공개검증 및 법 개정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국주영은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7. 9. 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9. 6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9. 7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그린아이넷'은 2009년도에 교과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해 구축하였고,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나, 단 한 번도 품질검증 결과를 공개한 적이 없음
- 그 동안 매년 수 많은 언론에서 그린아이넷의 '무용지물'을 비판해 왔고, 설치 건수는 2012년 대비 2015년에 82% 포인트나 급격히 감소했다.
- 금년 5월 대전교육청의 '사이버음란물 목록의 유효성 검증' 요청을 거부했고, 대전시의원이 설치안내 중단을 촉구한 바 있음.
- 또한 전북도위원의 요구에 따른 전북도청의 품질검증 요청을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또 다시 묵살하는 공공기관의 "수퍼 갑질 횡포"를 반복하고 있음.

□ 주요내용

- 전라북도의회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그린아이넷의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품질검증 요구를 묵살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규탄하며, 교육청은 설치 안내를 중단하고, 국회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민간 소프트웨어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촉구한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및 풍력발전 전문 교육기관 전북설립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최인정 의원 외 9인		제 출 일 자	2017.9. 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9. 6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9. 7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의회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재도약 방안으로 그간 전북이 기반을 다져온 탄소산업과 관련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과 지역산업구조의 다양성 확보와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풍력발전 전문 교육기관’ 의 전북설립을 촉구 하며, 이는 전북발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중앙정부의 지원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채택함.

□ 주요내용

- 가. 전북은 탄소산업의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운 선도지역으로 관련 인프라가 집적 되는 등 여타 지역과 비교우위에 있어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최적지임을 천명한다.
- 나. 선공약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반드시 전북에 설치되어 향후 대한민국 탄소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 다. 다양한 지역산업구조 혁신을 위해 전북지에 풍력발전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설립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촉구 및 교육개혁 방향 건의안

제 출 자	양용모·이해숙 의원 외 6인		제 출 일 자	2017. 9. 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9. 6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9. 6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교육문제로 우리 사회는 모든 세대, 모든 가정이 고통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 정부는 촛불의 열망으로 출범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개혁과 변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책무를 정직하고, 열정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합니다.
- 전라북도의회는 정부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교육 분야의 새 정부 과제와 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강력히 호소하는 건의안을 채택함.

□ 주요내용

- 가. 교육개혁의 방향을 교육 본질에 맞게 설정하는 작업이 가장 시급합니다.
- 나. 구정권에서 오래 동안 쌓여온 교육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 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교육 분권 실현과 교육자치 강화입니다.
- 라. 사립학교의 투명성 부족과 전횡, 편법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횡을 막아야 합니다.
- 마. 수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와 5등급 체제로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의 재력 등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학생부종합전형도 폐지되거나, 큰 폭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넥솔론 파산위기,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최영규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7. 9. 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9. 6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9. 7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전라북도의회는 정부가 전북지역의 일자리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넥솔론에 대한 제반 조치를 신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주요내용

- 가. 정부는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태양광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정책 즉, 산업은행을 통한 정책적 지원을 조속히 시행하라.
- 나. 전라북도와 익산시 등 자치단체와 정치권은 도내 기업 (주)넥솔론이 정상화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라.
- 다. 매각의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인 중 하나인 한화큐셀 등과의 원만한 인수합병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라.

가정·성폭력 상담소·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최훈열 의원 외 9인	제 출 일 자	2017. 9. 6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9. 6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9. 7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가정·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소나 보호시설, 긴급전화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에 포함되는 사회복지시설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여성가족부 2017년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지자체 국고보조금 지원 계획(안) 확정내시, <성폭력상담소 인건비, 운영비 기준>에 따르면 성폭력 상담소 상담원 인건비를 17,923천원을 제시했음.
- 전라북도 가정·성폭력피해자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상담소·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 절실하다는 관련 단체의 요구에 따라 내용을 검토한 결과 종사자 인건비는 ‘17년 권고안 대비 77%-79% 수준에 불과함.
- 이렇게 낮은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원인을 조사한 결과 여성가족부의 가정·성폭력피해자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건비, 운영비 지침이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보다 낮고 매칭예산으로 운영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이에 여성가족부의 「아동·여성 권익 지침」에 따라 운영비(인건비 포함) 예산 편성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건의안을 제출함.

□ 주요내용

- 가. 전라북도 가정·성폭력피해자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상담소·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 절실하다는 관련 단체의 요구에 따라 내용을 검토한 결과 종사자 인건비는 '17년 권고안 대비 77%-79% 수준에 불과함.

- 나. 이렇게 낮은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원인을 조사한 결과 여성가족부의 가정·성폭력피해자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건비, 운영비 지침이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보다 낮고 매칭예산으로 운영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다. 이에 여성가족부의 「아동·여성 권익 지침」에 따라 운영비(인건비 포함) 예산 편성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

KBS, MBC 방송민주화와 파업지지 결의안

제 출 자	양용모 의원 외 8인		제 출 일 자	2017. 8. 2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2017. 8. 30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9.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9. 14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의회는 이번 기회에 정권에 의한 언론장악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못하도록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제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한 이들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하며, 문화방송과 한국방송 노동조합과 구성원들의 언론자유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 주요내용

- 가. 전라북도의회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무너진 방송언론의 공정성을 살리기 위한 언론노조의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러시아 유조선 건조 물량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우선 배정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최인정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7. 9. 1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9.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9. 14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의회는 전북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한러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러시아 유조선 건조물량을 군산조선소에 우선 배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채택함

□ 주요내용

- 가. 대통령의 공약인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러시아 유조선 건조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우선 배정할 것을 촉구한다.
- 나. 러시아 유조선 건조물량이 현대중공업에 배정되도록, 2대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 다.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계획을 구체화하고 지역상생의 길에 나서라!

코레일-SR 통합 및 전라선 SRT 신설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강용구·김현철·박재만·백경태·양용호 이학수·이현숙·정진세 의원		제 출 일 자	2017. 9. 1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결일자		심사결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결일자	2017. 9. 13	심의결과	원안가결
이송일자	2017. 9. 14		이송기관	청와대 등
공포일자			공포번호	

□ 제안이유

- 현재 전주, 남원을 비롯한 전라선 지역주민들은 공공성을 무시하고 수익성만 중시하는 철도 분리정책에 희생되어 호남선에 비해 적은 열차 운행횟수를 배정 받고 있으며, 한 번에 강남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익산역, 오송역 등에서 환승해야 하는 철도이동권의 차별을 받고 있음
- 또한 전라선 주민들은 SRT가 운행하는 호남선, 경부선 주민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므로 철도의 공공적 가치를 훼손하는 왜곡된 가격정책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가. 전라선 고속철도 운행횟수를 확대하고 전라선 SRT노선 신설로 강남권 직통운행을 확보하라.
- 나. SRT보다 비싼 KTX 요금을 평균 10%이상 인하하라.
- 다. 호남선 고속철도의 운행횟수 확대 및 기업 이익추구로 인해 편중된 열차시간대를 고르게 조정하라.
- 라. 낙후된 전북지역 일반철도의 공공성 확보와 투자 확대를 위해 코레일과 (주)SR을 통합 운영하라.

Ⅲ.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수현황

○ 분야별

(2017. 9. 6 ~ 2017. 9. 13)

구분	계	행정	교육	사회	보건	환경	산업 경제	체육 관광	농축 수산	교 통	도시 계획	건 설	건 축	기타
금 회	9	5	1						1	1				1
2017년 누 계	17	2	3			2		1	4	3	1		1	

○ 제출자별

(2017. 9. 6 ~ 2017. 9. 13)

구분	계	인 원 별					기관단체
		소 계	1인	2인~9인	10인~99인	100인 이상	
금 회	8	8	7			1	
2017년 누 계	26	18	15	2	1		

2. 처리현황

(2017. 9. 6 ~ 2017. 9. 13)

구분	계	처 리 별					처리중
		소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금 회	8	8	8				
2017년 누 계	18	18	17			1	

3. 위원회별 처리현황(제10대)

(2014. 7. 1 ~ 2017. 9. 13)

구분	위원회별	접수	처리상황				비고
			계	처리	계류	반려	
전회 까지	소 계	82	82	81	1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8	8	8			
	환경복지위원회	19	19	19			
	농산업경제위원회	11	11	11			
	문화관광건설위원회	28	28	27	1		
	교육위원회	8	8	8			
	기 타	8	8	8			
금회	소 계	8	8	8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5	5	5			
	환경복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1	1	1			
	문화관광건설위원회	1	1	1			
	교육위원회	1	1	1			
	기 타						
누계	소 계	90	90	89	1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13	13	13			
	환경복지위원회	19	19	19			
	농산업경제위원회	12	12	12			
	문화관광건설위원회	29	29	28	1		
	교육위원회	9	9	9			
	기 타	8	8	8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17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17. 9. 6 ~ 2017. 9. 13)

기관별		구 분	요 구	제 출	미제출	비 율(%)	비 고
계	금 회		85	85		100	
	누 계		334	334		100	
도	금 회		71	71		100	
	누 계		369	369		100	
교육청	금 회		14	14		100	
	누 계		50	50		100	

2. 2017년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17. 9. 6 ~ 2017. 9. 13)

기관별		구 분	계	운 영	행 정 자 치	환 경 복지	산 업 경 제	문화관 광 건 설	교 육	특 별
계	금 회		101	0	25	20	11	14	31	0
	누 계		332	0	82	55	67	46	78	4
도	금 회		80	0	24	18	11	14	13	0
	누 계		296	0	80	53	67	44	49	4
교육청	금 회		21	0	1	2	0	0	18	0
	누 계		36	0	2	2	0	2	30	0

3. 제10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횡수별)

(2014. 7. 1 ~ 2017. 9. 13)

구 분	요 구	제 출	미제출	비 고
합 계	2250	2250		
전라북도	1718	1718		
교 육 청	532	532		

4.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횡수별)

(2014. 7. 1 ~ 2017. 9. 13)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설	교 육	특 별
합 계	1953	439	316	239	262	594	88	15
전라북도	1482	402	295	226	240	268	44	7
교 육 청	471	37	21	13	22	326	44	8

5.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건수별)

(2014. 7. 1 ~ 2017. 7. 25)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설	교 육	특 별
합 계	7217	1772	824	975	1042	1735	522	347
전라북도	5991	1678	775	932	964	1108	286	248
교 육 청	1226	94	49	43	78	627	236	99